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3. 7. 26.>

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즉시

신청인	대상구분	보훈번호	
	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

변경구분	[ ] 예금계좌 변경 [ ] 계좌입금으로 변경 [ ] 압류금지 전용계좌(호국보훈지킴이)로 변경 [ ] 현금지급으로 변경	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
변경지급 희망시기		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 사본)	수수료 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변경사항 승인	→	지급
신청인		관할 보훈(지)청 제주특별자치도		관할 보훈(지)청 제주특별자치도		관할 보훈(지)청 제주특별자치도

확인
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

210㎜×297㎜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